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6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차파트너스자산운용㈜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」 제34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차파트너스자산운용㈜(이하 “차파트너스”)에 과징금 346백만원 부과

○ **(수정심의)** 과징금 산정 시 출자 경위, 목적, 결과, 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‘346백만원’에서 ‘104백만원’으로 감액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 포함)에 대하여 ①법령상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, ②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, ③금전·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,

① (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) 차파트너스는 20xx.xx.xx. 대주주(주요주주)인 甲의 특수관계인 A가 진행한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○원을 차입하여, 동사 보통주 ○주를 주당 ○원에 매입함으로써, 법령상 허용한도(자기자본의 100분의 8)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고,

② (출자이행 약정) 20xx.xx.xx.「Ⓐ 규약」을 통해 대주주(최대주주)인 丙의 특수관계인 Ⓐ를 위하여 ○원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를 체결 후, 20xx.xx.xx. 약정된 출자를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,

③ (금전 대여) 20xx.xx.xx. 대주주(최대주주)인 丙의 특수관계인 B에게 ○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「자본시장법」 제9조(그 밖의 용어의 정의) 제1항
□「자본시장법」 제34조(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)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
□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2조(용어의 정리) 제4호
□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7조(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) 제3항
□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8조(신용공여의 범위 등)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제4호
□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3-71조(대주주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등) 제5항
□「지배구조법」 제2조(정의) 제6호
□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3조(특수관계인의 범위) 제1항 제1호